

##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

공무원·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

1시간당 상한액

**40만원**

직급별 구분 없음

각급 학교 교직원, 학교법인·언론사 임직원



1시간당 상한액

**100만원**

※ 공무원·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%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

※ 다만, 기관별 행동강령의 사례금 상한액이 더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

## 외부강의등 신고 보완 기간이 연장됩니다.

상세 명세나 사례금 총액 등을 모르는 경우  
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추후 보완 신고 필요

외부강의등을  
마친 날부터

**2일**

이내  
보완



해당 사항을  
안 날부터

**5일**

이내  
보완



국민권익위원회 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



국민신문고  
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

국민콜 110  
정부민원안내

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(세종청사 7동) 국민권익위원회  
대표전화 110, 1398(부패·공익신고 상담)

[www.acrc.go.kr](http://www.acrc.go.kr)

# 부정청탁금지법

2018년 1월 17일부터  
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공직자용



국민권익위원회

# 부정청탁금지법,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.

##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!

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·선물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

기존 **10만원** ▶ 변경 **5만원**  
 축의금·조의금 **10만원**

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.

**선물** 5만원 ▶ **5만원**  
 금전,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 
 농수산물·가공품\* **10만원**

**음식물** 3만원 ▶ **3만원**  
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등  
 기존과 같음

\* 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·재료의 50% 넘게 사용하여 가공)은 10만원까지 가능  
 (농수산물,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, 임산물도 포함)

### 주의하세요!

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.

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!



- 예를 들어,
- 인허가 신청인
  - 지도·단속 대상자
  - 입찰 상대방
  - 인사·평가, 감사대상자
  - 고소·고발인, 피의자 등

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※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(예시)

-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
-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
-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
- 상급 공직자가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
- 다른 법령·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

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**합산하여 10만원까지** 가능하지만,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농수산물 선물 + 그 외 선물  
5만원 5만원

농수산물 선물 + 그 외 선물  
3만원 7만원

부조 목적으로 축의금·조의금과 화환·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**합산하여 10만원까지** 가능하지만, 축의금·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.



축의금·조의금 5만원+ 화환·조화 5만원  
 축의금·조의금 3만원+ 화환·조화 7만원

축의금·조의금 7만원+ 화환·조화 3만원